

◎건설부고시제380호

서울시 도시계획 동자동 재개발구역 결정 및
양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
개발법 제4조,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
하니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에 비치하여 토지소
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년 11월 30일

003부 장관

79

(4) 제8118호

관 보

1978. 12. 8 (월요일)

1. 동자동 재개발구역결정

구	역	명	위	치	면	적
서울동자동	재개발사업구역		서울특별시	동자동14, 35번지 일대		45,157㎡(13,660평)